

분류	현행	변경	개정사유
관계법령 추가	메르스 역학조사, 환자·접촉자 관리 및 현장조치·지휘 관련 법령 주요 내용	메르스 대응 관련 법령(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) ○ (감염병예방법) - '16.6.30부터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주요 내용 추가 - 제20조의2 (시신의 장사방법 제한) 등 ○ (검역법) - '건강상태질문서'작성 기피 또는 거짓 작성 제출 시 벌칙 조항 추가 - '오염지역 체류·경유 신고서'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시 과태료 조항 추가	보완
역학적 연관성 및 임상증상	역학적 연관성 판단 - 중동지역 여행력(여행국가, 도시, 여행기간, 현지 환자 발생 현황 등) - 위험요인 노출(낙타접촉력, 낙타·낙타고기 섭취, 현지병원 방문, 의심환자 접촉 등) - 노출기간과 잠복기, 발병일 고려 임상적 연관성 판단 - 메르스 임상 증상(발열*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 등)과 잠복기(14일 이내) 고려 * 해열제 복용여부 고려	역학적 연관성 판단 - (현행과 같음) ※ 역학적 연관성의 구분 - (역학적 연관성 높음) 발생국 현지병원 방문,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접촉,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, 낙타유·낙타고기 섭취 등 - (역학적 연관성 낮음) 중동지역 방문 임상적 연관성 판단 - (현행과 같음) ※ 호흡기 증상의 구분 - (중증 호흡기 증상)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(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) - (경증 호흡기 증상) 기침, 가래 등 경증의 임상 증상	보완 ○ 역학적 연관성 및 임상적 연관성을 구분하여 정리

분류	현행	변경	개정사유
메르스 (MERS) 의심환자 사례정의	의심환자 ○ 발열과 호흡기 증상 + 증상발현 14일 이내 중동 방문 ± 역학적 연관성 ○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+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	의심환자 ○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- 중동지역*을 방문한 자 -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-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(국가)의 의료기관에 직원, 환자, 방문자로 있었던 자 -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, 낙타고기 또는 낙타유 섭취력이 있었던 자 * 중동지역이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(지역)를 말함 ○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○ 그 밖에 의료진 또는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분류한 자 ※ 환승 등을 위해 공항에만 머무른 자의 경우 중동지역 여행자로 간주하지 않음(단, 공항 밖 출입자는 제외)	보완 ○ 본 지침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을 위해 관련 법령(감염병 예방법 및 감염병의 진단 기준 고시)의 기준보다 역학조사 및 검사 대상을 넓게 적용하여 신고자 및 신고대상 환자의 범위를 확대함 *법령상 ‘ 의사환자 ’의 신고는 의사 등으로 제한되나, 본 지침에서 ‘ 의심환자 ’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음 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(고시) 환자: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: ①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(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)이 있으면서 -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-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②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으면서,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, 환자, 방문자로 있었던 자 ③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고,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, 환자, 방문자로 있었던 자

분류	현행	변경	개정사유
	중동지역(아라비안 반도 및 그 인근국가) ○ 중동지역은 아라비아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(바레인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, 요르단, 쿠웨이트, 레바논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아랍에미리트, 예멘)	중동지역(아라비안 반도 및 그 인근국가) ○ 중동지역은 아라비아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(바레인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, 요르단, 쿠웨이트, 레바논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아랍에미리트, 예멘)	수정 ○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관할 지역이나 이스라엘 영토이므로 이스라엘로 수정
메르스(MERS) 의심환자별 대응	의심환자 ○ 환자이송 및 격리 -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후 음압 격리병상 격리입원 ○ (검체채취) 음압격리병상에서 검체채취 *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으로 이송 어려운 경우(예: 수술 또는 항암치료 등의 목적으로 내원한 국비지원 의료관광 환자 등)는 해당 병원 음압격리병상 격리 및 검체채취 ○ 의심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통보, 모니터링 - 신고접수한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- 통보는 보건소 담당자 자율적으로 시행 중 - 접촉자에 대해 수동감시	의심환자 ○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, 경증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관리 방향을 단순화시킴 - 검사 1회 음성이면 퇴원 - 격리병상은 현재 입원중인 의료기관에 법정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상이 있으면 배정 가능 - 접촉자는 조사 후 명단확보까지 시행하고 입력 및 통보는 대기	변경 ○ 우리나라 의심환자 기준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여* * 현재 발열 및 경증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단순 중동지역 방문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하는 국가는 없음 ** (의심환자 기준)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3-6판) → 발열과 호흡기 증상(4판) ○ '16.8.31 기준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140명 중 역학적 연관성이 적고, 경증 호흡기 증상으로 의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123명(87.9%) ○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의심환자는 1회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바로 귀가 조치(신속한 격리해제로 의심환자의 일상생활 제한의 부담을 줄이고, 방역 업무를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게 더 집
	○ 단,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차 검사 실시 후 격리 해제할 수 있음	<삭제>	

분류	현행	변경	개정사유
	① 메르스 검사결과 음성이고, 다른 호흡기 원인 병원체가 확인된 경우 ② 임상 양상이 호전되고, 임상적으로 메르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③ 최근 2주 이내 발생지역의 의료기관 방문력이 없고, 환자와의 접촉력, 낙타접촉력이 없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우 ④ 검사에 적절하게 검체가 채취되었을 경우		중 할 필요가 있음)
메르스 (MERS) 검역단계 의심환자 대응	검역단계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○ 접촉자 통보 및 모니터링 - (검역소) 의심환자 발생 여부 안내 및 메르스 검사 결과 문자 통보	검역단계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○ (주기장 게이트 검역) ‘건강상태질문서’의 필수 확인 사항(이름, 연락처, 시군구까지 기재된 주소, 경유국가, 증상)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징구 ○ (의심환자 입국 및 통관) 대리 입국 및 통관 절차 명시 ○ (의심환자 교통편) 예약 항공편 변경 요청 등 교통편 관련 사전 확인 및 필요 조치사항 명시 ○ (환자 이송) 구급차(우선순위: ① 검역소 구급차, ② 보건소 수송차량, ③ 119 구급차) 이용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또는 거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 ○ (접촉자 조사) - 승객, 승무원, 조종실 탑승직원 등으로 구분하여 접촉자 설정 범위 세분화 ○ (접촉자 통보 및 모니터링)	보완 ○ 검역단계 의심환자 대응 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대비 가능하도록 세부절차 보완 및 현행화 - 의심환자 대응(격리입원 설명·동의, 이송 시 주의사항, 격리해제 시 교통편 등) - 의심환자 구분에 따른 접촉자 범위 설정 및 관리 등

분류	현행	변경	개정사유
		- 해외여행객 출입국 안내,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자 안내 및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표준문안 마련 - 의심환자의 메르스 검사 결과 문자 통보 신설 - (검역소) 접촉자 모니터링 대상 안내 문자 통보 - (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) 의심환자의 1차, 2차 검사 결과 문자 통보(최종 음성 나오면 모니터링 해제를 문자로 통보)	
메르스(MERS) 의료기관 의심환자 대응	의심환자 조치 ○ (음압병상 배정) 최초인지보건소가 관할 시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(우선 활용) 또는 거점 병원 음압병상 배정 요청	의심환자 관리 ○ (음압병상 배정) 최초인지보건소가 관할 시도에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(우선 활용) 또는 거점병원 음압 병상 배정 요청 - 단, 다음에 해당할 경우 신고한 의료기관의 음압 병상*을 배정할 수 있음 1) 의심환자가 경증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우 2) 의심환자가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거나 중증 상태여서 이송이 어려울 경우 * 의료기관에 병상 배정이 가능한 법정 음압병상 기준 1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<별표4의2> 음압병실설치 및 운영 기준 또는 2)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시설기준을 충족 하는 음압격리병실	신설 ○ 의심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병상 배정 가능하도록 기준 제시 - 신고한 의료기관의 음압병상에 격리유지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설 - 배정 가능한 음압병상 기준을 제시

분류	현행	변경	개정사유
메르스 (MERS) 진단검사 민간확대	[비교] (기존) 메르스 진단 검사 ○ (검사기관) 보건환경연구원,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,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 ○ (검사대상)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○ (검체종류) 하기도, 상기도, 혈액 검체 ○ (검체채취) 음압병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(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의료기관 등)에서 채취	민간 의료기관 메르스 진단 검사 시행 ○ (검사기관) 우수검사실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(자체 검사), (자체검사 미실시) 의료기관은 검체 채취하여 임상검사센터로 수탁 ○ (검사대상) 의심환자 사례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(i) 환자가 원할 때 또는 (ii)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○ (검체 종류) 호흡기 검체(하기도+상기도) ○ (검체 채취) - 음압격리병상 또는 1인 병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도 채취 가능 - 검체 채취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채취 ○ 검사결과 신고 - 양성결과 발생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신고 - 양성 검체의 잔여분은 질병관리본부 긴급검체 운송 시스템 또는 관할보건소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즉시 송부 - 자체 검사기관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검사실적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로 제출	신설
메르스 (MERS) 민간	-	민간 의료기관 메르스 진단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대응 체계 및 절차	신설

분류	현행	변경	개정사유
진단검사 양성 시 대응 체계		○ 양성 결과 확인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신고 ○ 해당 환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하여 의심환자 대응 절차 수행 - 지역사회에 있으면 관할보건소가 의심환자 확인 및 이송 -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음압격리병상으로 바로 이송 - 하기도, 상기도, 혈액 검체 다시 채취 ○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여검체 재검 결과 양성이면 확진 환자 대응 체계로 전환	
메르스 (MERS) 유증상자 관리	유증상자 (신고 후 의심환자 분류 안된 경우) - 관할보건소가 잠복기동안 수동감시	유증상자 수동감시(안) → 관할보건소가 잠복기 동안 수동감시 * * 모니터링 시작 시 전화안내, 해지 시 전화 통보 ※ 검역 시 인지된 유증상자 통보는 검역소가 공문과 <u>문자메시지</u> 를 관할 보건소로 통보	보완 ○ 대응 지침 3.6판에서 4판으로 개정 되면서 14일 이내 중동 방문한 ‘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’이 있는 유증상자는 의심환자 사례정의에서 빠짐 → 유증상자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대두
메르스 (MERS) 의심환자 접촉자 관리	수동감시 ○ 접촉자가 잠복기 동안 발열,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보건소로 연락	수동감시 → 사전 안내 및 모니터링 해지 시 <u>문자메시지로 통보</u> → 의심환자가 경증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우 접촉자 조사 및 명단 확보까지만 시행	보완 ○ 의심환자 접촉자는 수동감시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접촉자 관리가 미흡
	-	접촉자 격리해제 ○ 의료기관종사자 중 무증상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시 검사 시행 - 최종 노출일로부터 13일 째 메르스 검사 시행	신설 ○ 의료기관종사자가 확진환자의 밀접 접촉자일 경우, 능동감시 및 근무복 귀 전에 검사 필요

분류	현행	변경	개정사유
		·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· 검사 결과 양성 시 확진환자 대응으로 전환	
대응주체 (주관보건소)	대응사항별 대응 주체 및 주관보건소 명시 ○ 검역관, 보건소, 관할지역보건소, 주관보건소, 최초인지보건소, 환자관할보건소,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등	대응사항별 대응 주체 및 주관보건소 명시 ○ 검역관 ○ 최초 인지 보건소 ○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○ 의심환자 거주지 관할보건소 ○ 접촉자 거주지 관할보건소 ○ 확진환자 거주지 관할보건소	보완 ○ 대응 주체에 혼선이 없도록 대상사항에 주어로 명시
외국인 메르스 (MERS) 의심환자 대응 지원	-	외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입원 시 지원 방안 ○ 격리입원·검사 설명, 동의 위해 영어 또는 아랍어 메르스 안내문 전달 ○ 중동지역의 경우 대사관 핫라인 이용, 그 외 국가는 외교부 통해 해당 대사관으로 전파 및 협조 요청 ○ 통역비, 일회용 위생용품 비용 지원 ○ 무슬림의 경우 외부 할랄식 구매 비용 지원	신설 ○ 외국인 의심환자 격리입원 시 언어·문화·외교적 고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침에 포함하고 안내
메르스 (MERS) 확진환자 대응	확진환자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○ 대응 흐름도 및 단계별 조치사항 - ① 확진환자 역학조사 → ② 감염경로 재확인 → ③ 접촉자 재분류 및 모니터링 → ④ 환경 조사 계획 수립	확진환자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○ 대응 흐름도 및 단계별 조치사항 - ① 즉각대응팀 가동 → ② 환자역학조사 → ③ 접촉자 재조사 → ④ 접촉자 모니터링 → ⑤ 환경 조사 및 소독 ○ 의료기관 내 유행 발생 시 조치 사항	보완 ○ 국내 확진환자 발생 시 효율적 대응 위한 지침 현행화

분류	현행	변경	개정사유
		- (시설차단) 병원 또는 건물 폐쇄 - (접촉자 재분류) 재분류 전 선제적 시설 격리 필요성 검토 - (접촉자 격리해제) 의료기관종사자 중 무증상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노출 후 13일 째 메르스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	
[부록] 메르스 환자/접촉자 관리시스템 매뉴얼	메르스환자/접촉자관리시스템 매뉴얼 ○ 메르스환자/접촉자관리시스템	메르스환자/접촉자관리시스템 매뉴얼 ○ 메르스환자/접촉자관리시스템 ○ 기관별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메르스환자/접촉자 관리시스템 입력 사항	보완 ○ 4판 개정 이후 시스템 본격 가동에 따라, 웹 입력사항 등 시스템 매뉴얼 내용 삽입
[부록] 감시대상자 생활수칙	감시대상자 생활 수칙(부록1의 ‘붙임1’) ○ 능동감시, 수동감시자 대상 자가격리대상자 생활 수칙(부록2의 ‘붙임1’) ○ 자가격리자 등 대상	‘~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’ ○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○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○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○ 유증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	명칭 변경 및 보완 ○ 메르스 접촉자 구분에 따른 자가 모니터링 및 생활수칙 안내문을 별도로 마련하고 보건소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보완 - 보건소에서 접촉자 설명이 용이하도록 개선 - 접촉자가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용이하도록 강조
[부록] 메르스 (MERS) 관련 안내문 추가	메르스 예방안내 리플릿 ○ 부록 1 ‘메르스(MERS) 환자 및 접촉자 관련 사례 정의’의 붙임1의 형태로 수록	(부록9) 메르스 관련 안내문 ○ ‘부록 2. 메르스 관련 안내문’을 추가, 실용화 - 중소병원·의원용 메르스 안내문 - 메르스 바로알기 안내문(한국어/영어/아랍어) 추가	추가 ○ 중소병원·의원에서 실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포그래픽을 포함한 요약 지침의 필요성 대두에 따른 추가 - 현장 요구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

분류	현행	변경	개정사유
[서식] 1.2	▪ 건강상태 질문서 ▪ 소독시행 명령서	▪ 건강상태 질문서 ▪ 소독시행 명령서	보완 ○ 검역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
[서식] 7,8	▪ 격리통지서(한글) ▪ 격리통지서(영문)	▪ 격리통지서(한글) ▪ 격리통지서(영문)	보완 ○ (국문)본문의 대상에 법적내용을 구체화 ○ (영문)문장 수정 등
관련부서 연락처	-	▪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	현행화